

의안번호	제 1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7. 1. . (제 회)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1997. 1. 10 .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제출일자 : 1997. 1. 10.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운영을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수를 “11인이상 20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함.(안 제2조)
- 심의회 기능 개정(안 제4조)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등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10인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부시장	
③위원중 분과 · 도시 · 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세무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1.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		
2.~3.(생략)	2.~3.(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기능)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생략)	3.(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및 의사) ①~②(생략)	제7조(회의 및 의사)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②(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와 서기) ①(생략)	③.....	재적위원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지명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11인이상 20인이내”를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부과”를 “세무”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정통한 자

제4조제1호 내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지정”을 “지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